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1 선고 2022나30333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피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3. 5. 3.

판 결 선 고 2023. 6. 21.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28. 선고 2021가소1651210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 위 적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100,000원을 지급하라1) .

예 비 적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939,7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7.부터 2023. 4.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대부업자인 원고는 2018. 8. 7. C에게 700만 원을 대출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각 연 24%, 변제기 2023. 8. 6.로 정하여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

나. 같은 날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91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한다는 전자문서 형태의 연대보증계약서(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라 한다)가 원고에게 접수되었는데,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에는 피고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다.

다. C는 2021. 2. 16.경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여 그 무렵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23. 4. 6. 기준 미회수 원리금은 10,640,39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였고, 원고 측 직원이 피고와 전화통화를 통해 원고의 보증 의사 등을 확인하였으므로 대부업법 제6조의2 제3항에 따라 피고가 자필 기재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되었고(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에 따른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이 없고 원고 측 직원과 연대보증계약과 관련하여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 다만 직장 동료인 C가 대출을 알아보기 위해 피고의 신용상태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하여 이를 건네주었을 뿐 C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민법 제428조의2 제1항).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가 전자계약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민법 제428조의2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전자서명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는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 해당하여 보증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부업법 제6조의2 제3항에 따라 피고가 자필 기재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대부업법 제6조의2는 대부업자가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보증기간, 피보증채무의 금액, 보증의 범위, 연체이자율’에 대한 보증인의 자필 기재를 요구하면서 위 추가적 자필 기재 사항에 대한 보증인의 의사를 음성 녹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한 경우 해당 사항의 자필 기재가 간주된다는 규정에 불과할 뿐 음성 녹음을 하는 경우 연대보증계약서를 자필 기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우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 해당하고 별도로 피고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이 작성된 바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의사를 음성 녹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원고는 1심에서 피고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한 바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변론주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있고, 원고가 이에 관한 입증을 하지 못한 것, 즉 유효하게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1심 판결이 변론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는 원고 측 직원에게 자신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것이 아님에도 서명하였다고 기망을 하였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

피고는 원고 측 직원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 3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 측 직원이 'B(피고)'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는 대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오히려 처음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피고의 성별이 '여'가 아닌 '남'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피고 명의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였으므로 피고 본인과 통화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는 본인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음성녹음파일의 목소리가 피고의 목소리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재철, 판사 권가희, 판사 곽새롬

1) 피고는 2023. 4.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주위적 청구취지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0,640,393원(2023. 4. 6. 기준 원리금) 및 그 중 6,939,718원에 대하여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9,10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고 기재한바, 명시적 일부 청구로 9,100,000원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